定　　款

2005. 2.

社團法人 韓國꽃藝術作家協會
Korea Floral Art Composers Association, Inc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 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꽃예술작가협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라 한다.

제 2 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시에 두고 필요시에는 지회·지부를 둘 수 있다.

제 3 조(목 적) ① 본 회는 꽃예술의 연구 및 꽃꽂이작가 육성을 통하여 국민의 건전한 취미생활과 꽃예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 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우리 꽃예술문화의 연구와 그에 따른 행사 및 제반사업
2. 국민 정서함양에 관한 사업
3. 꽃문화예술에 관한 국내외 각기관 단체와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업
4. 꽃예술에 관한 한국 문헌과 외국 문헌의 소개와 연구조사 및 발표
5. 전시회, 강습회, 강연회 등에 관한 공동연구 및 주최
6. 꽃예술의 전반적인 지도와 그에 관한 서적의 출판
7. 꽃예술의 연구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꽃예술작가 육성사업
8.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일체의 부대사업

제 5 조(수익사업)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서울시에 보고한다.

제 6 조(이익의 제공) ① 본 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이며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사업은 서울시에 보고 한다.

② 본 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가 아니면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을 두지 못한다.

제 2 장 회 원

제 7 조(구분 및 입회절차) 본 회의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1. 준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각 회 회장 추천으로 이사장에게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정회원은 준회원으로 가입 1년을 경과한 자로 한다.

제 8 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 9 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 회의 정관 및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 10 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 11 조(회원의 상벌) ①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제명, 견책 이외의 징계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2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장 1인
2. 부이사장 2인
3. 이 사 11인(이사장, 부이사장 포함)
4. 감 사 2인

② 단, 이사 인원수는 2인에서 15인 이내로 한다.

제 13 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고 그 결과에 관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취임하여 서울시에 보고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연임할 수 없으며 이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14 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제1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15 조(상임이사) ① 본 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사 중에 선임한다.

제 16 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사 2년 2. 감 사 2년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단,임기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 17 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통리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의 유고 및 궐위시 내부규칙에 의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나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을 때에는 서울시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또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8 조(고문 등) ①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고문, 자문위원 및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추대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9 조(구성) 총회는 본 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0 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21 조(소집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 요구한 경우
2. 제1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 요구한 경우

② 이사장이 제1항의 소집요구를 받은 후 14일이 경과하여도 소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22 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 개시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 조(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본 회의 해산 및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 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4 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법인과 이해가 상반되는 자에 관한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 25 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 26 조(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2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5일 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7 조(소집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제1항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재직이사 과반수가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 28 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다.

제 29 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10. 기타 중요사항

제 6 장 재 정(재산과 회계)

제 30 조(재산의 구분) 본 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 회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3. 본 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1 조(기본재산의 처분) 본 회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하는 때에는 의결을 거쳐 서울시에 보고 한다.

제 32 조(수입금) 본 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기본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찬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제 33 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4 조(예산편성) 본 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 35 조(차입금) 본 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시에 보고 한다.

제 36 조(계속비) 본 회는 매 회계년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써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 37 조(결산) 본 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8 조(결산잉여금) 세입, 세출 결산잉여금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금 또는 신규사업 수행에 필요한 준비금으로 처리한다.

제 39 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실시한다. 단, 필요한 때에는 수시 감사를 할 수 있다.

제 40 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명예직이며,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임원(상임이사)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7 장 사무부서

제 41 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42 조(상임위원회) 본 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 43 조(법인해산) ① 본 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서울시에 보고한다.

② 본 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하고

그 결과에 관하여 서울시에 보고한다.

제 44 조(정관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울시에 보고 한다.

제 45 조(업무보고)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46 조(규칙제정)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 행 일) 이 정관은 이사회에서 가결하여 총회에 의결하여 통과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본 회 정관개정당시 회원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사단법인 한국꽃예술작가협회 정관을 작성함

2005. 2.